



의안 번호	제 4 호
의 결 연 월 일	2011. 11. 22.(화) (제 2 회)

의
결
사
항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12-20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출자	국무총리 김황식
제출 연 월 일	2011. 11. 22.(화)

1. 의결주문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2012-2016)”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 계획(안)(2012-2016)”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비전 및 정책목표

- 비 전 :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
- 정책목표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 5대 정책방향

- (창출)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촉진
- (보호)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 (활용) 지식재산의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 (기반)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신지식재산) 신제품, 생물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육성 체계 정립

□ 재정투자 및 향후계획

- '12~'16년 기간 동안 총 10.2조원(추정) 투자
- 21개 관계부처 및 16개 광역지자체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12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 제3차 회의에 상정('12.1월 예정)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12~2016) 요약

2011. 11. 22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학교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I.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개요	1
II.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과제	2
III. 지식재산 정책목표, 방향 및 추진전략	5
IV. 지식재산 창출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6
V. 지식재산 보호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0
VI. 지식재산 활용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4
VII. 지식재산 기반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8
VIII. 신지식재산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22
IX. 재정투자 계획	26
〈붙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목록	28

I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개요

1

전략적 필요성

- 세계 경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시대를 넘어 특허·저작권·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진입
 - 선진 기업들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인 지식재산의 개발·축적에 집중, 선진국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
-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 간 ‘지식재산 전쟁’이 본격화
 - IT 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특허소송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대응전략도 부재
- 최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술 간 융합, 기술·감성·문화의 접목 현상은 우수한 창의역량을 보유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산업화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넘어, 우수한 청년들에게 질 높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기반 시대의 국가전략 절실

2

기본계획의 성격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이자,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전략
 -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책의 수립·추진 방향 제시
- 향후 5년간(2012~2016)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연도별로 세부 실행계획인 시행계획 수립

3

기본계획 수립 경과

-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마련('09.7)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등 주요 과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국무총리실장) 설치('09.10)
 -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합동으로 「기본계획 T/F」 설치('10.3)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공포('11.5.19) 및 시행(7.20),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11.7.28)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정책방향(안)” 의결

II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과제

1

세계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 세계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물리적 생산활동이 아닌 창의성, 감성,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면서 기업의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
- 지식기반 경제는 기술 간 융·복합을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창조 경제’로 진화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파생시장(Purple Ocean)을 창출
-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특허·저작권 등 종래의 지식재산 외에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新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
- 국가 간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대두
 - ※ 무역분쟁이 반덤핑 제소에서 지재권 침해에 기반을 둔 수출입 제한으로 변화

- (미 국) '80년대 하이테크 산업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일본에게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받게 되자 親지식재산(Pro-IP) 정책에 집중
 - '08.10월 정부 기관들 간의 협력·조정 강화와 인력·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 법」(PRO-IP 법) 제정
 - ※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장관급) 신설, 연방정부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 '10.6월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 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인 “지식재산집행 공동전략” 수립
- (일 본) '90년대 이후 신흥개도국의 급성장에 따른 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표방('02)
 - '02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총리) 설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제 구축
 - '03년 이후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정책 강화
 - ※ 초기 기본 인프라 구축 중점, 점차 콘텐츠·국제표준 획득 등 전략분야에 역량 집중
- (중 국) '05년 「국가지식산권전략제정위원회」(위원장: 부총리)를 설치하고, '08년 “국가지식산권전략 강요”*를 수립하는 등 능동적으로 정책 추진
 - * 제도정비, 창조·이용 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문화배양의 5대 전략 마련
 - 지식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백·천·만 知識產權 인재공정”(‘07~‘10) 등 인재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매년 “지재권 보호 행동계획” 수립
- (유 럽) '08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의 도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 발표
 - EU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 단일 특허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 시장법」 발의('11.4)

- (창출 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생산성은 저조한 상황
 - ※ 지식재산권수지(억달러) : △20.9('95), △25.3('00), △26.5('05), △32.7('08), △58.2('10)
 - 지재권 전쟁시대에는 독보적이고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생존 가능하나, 우리 기업의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는 미흡
 -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잠재역량에 비해 지식재산 창출 성과가 부족
- (보호 분야) 지재권 보호 순위는 세계 32위(IMD, '10년)로 여전히 미흡
 -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되지 않아 침해유인 상존
 - 특허관련 소송 관할권의 이원화에 따라 분쟁의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조정·중재 제도의 활용은 부진
 -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 심각
- (활용 분야) 지식재산이 독립적인 수익창출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 비즈니스 생태계는 미약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기술이전수익/연구개발비) 미흡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등에 대응한 공정질서 확립 시급
- (기반 분야) 지식의 '재산적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타인의 지식 재산에 대한 존중 의식과 지재권 침해의 불법성 인식이 미약
 - 발명가·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하여 창출→보호→활용→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에 장애
- (신지식재산 분야) 과학기술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산재권·저작권)의 체계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대두
 - 미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감안, 보호·육성 체계 확립 필요

Ⅲ 지식재산 정책목표, 방향 및 추진전략

1 비전·목표 및 정책방향



2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2012-2014년) :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 조기 구축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각 분야별로 원활한 지식재산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및 법령·제도 정비

□ 2단계(2015-2016년) : 지식재산 부(富) 및 고용 창출 메커니즘 구축

- ‘창출→보호→활용→고부가가치 창출→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 완성 및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시장 형성

IV

지식재산 창출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성과 지표	◆ 표준특허 확보 비율 : 3.1%('10) → 5.0%('16) ◆ 특허동향조사·분석 실시 비율 : 31.1%('10) → 100%('16)
----------	--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 특허, 표준화 등 개별 역량은 우수하나, 세계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춘 **표준특허 창출역량은 미흡**
- 국가R&D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관리전략 미흡**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은 취약

□ 주요 추진과제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국가R&D-특허-표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 단계에 걸쳐 특허전략과의 연계 강화
 - ※ 표준특허 PM(Project Manager) 도입, 정책협의체 구성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 전문인력 양성, 정보서비스 확대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 R&D 기획 시 특허정보 활용 확대, 지재권 선점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로드맵** 구축·지원
 - 발명자 인터뷰 등 기술가치 향상 프로그램 운영, 연구성과 목표 관리제 도입 및 질적 평가모델 개발 등 R&D에 대한 질적관리 강화
 - 국가R&D 사업비 중 지식재산 경비 확대 및 효율화
- (R&D 유형별 차별화) 응용연구는 **핵심·원천특허 확보**, 개발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 중심** 등으로 차별화된 지식재산 창출전략 추진
 - 기초연구는 **상향식 연구기획** 및 유연한 관리체계로 창의력 발현 유도

성과	◆ 콘텐츠 수출액 : 30억달러('10) → 75억달러('16)
지표	◆ 디자인 국제경쟁력 순위 : 15위('10) → 7위('16)

□ 현황 및 문제점

- 콘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2%('10)에 불과, 시나리오 및 기획력이 부족하고 핵심기술은 해외에 크게 의존
- 상표·디자인은 출원 건수는 세계 3위이나, 글로벌 100대 기업 브랜드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2개에 불과
-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창의적 고급 인적자원 취약, 낮은 기술 경쟁력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

□ 주요 추진과제

- (차세대 콘텐츠 발굴) 기기-콘텐츠-플랫폼 통합 추세에 대응하여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융합형 콘텐츠(가상현실·3D·홀로그램) 육성
 -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등 금융·투자 활성화
-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권리화 및 해외진출 지원, 디자인과 기술 R&D의 융합 및 전문인력 고도화
 - ‘한국 디자인 DNA사업’*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 디자인 생태계 조성
 - * 역사·문화 등에서 고유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활용
-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후불형 서바이벌 R&D’*, ‘소액 도전형 R&D’ 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S/W R&D 프로그램 신설
 - * 복수의 연구주체가 참여한 후 최우수 연구자에 R&D 과제 비용 지급
 - S/W뱅크 설립 등 개별 기술자산의 활용 극대화, S/W 마에스트로 및 고용계약형 S/W 학·석사 과정 등 다양한 고급 인재 양성

3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성과	◆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 특허수 : 0.51('10) → 0.70('16)
지표	◆ 국제공동연구비 비중 : 6.7%('10) → 10.0%('16)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높은 연구성과 부족*,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의인재 기반 및 창작환경 취약
 - * '혁신성'과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경쟁력' 분야는 30위권 수준(IMD)
- 내·외부 아이디어 및 자원의 효율적 결합을 통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국내·외 공동연구 및 자원의 연계 활용 필요

□ 주요 추진과제

- (창조적 지식재산환경 조성) 소규모 연구자 그룹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 고위험-고수익형 연구의 성실실패 용인 등 도전적·창의적 연구 강화
 - ※ 창의력 중심 평가, 사업관리 간소화, 조기완료 승인제도 실시 등
 - 창의인재동반사업, 국내·외 대학 연계교육 등 콘텐츠분야 창의성 교육을 확대하여 기획·창작·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문화콘텐츠 제작자·스태프의 처우 개선*
 - * 모태펀드·영화발전기금 출자 영화·드라마전문펀드의 경우 인건비 별도계정 의무화
- (개방형 연구개발 촉진) 산학연 협력연구 사업 우대 강화, 공모형 R&D 추진을 통한 국가R&D 사업의 기업참여 확대
 - 원천기술·녹색성장 등 전략분야 투자 확대,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확산 등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강화
 - 해외 우수 지식재산 창출인력의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연구소·연구자 간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확대

4

대학·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성과	◆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재권 전문인력 확보율 : 17%('10) → 30%('16)
지표	◆ 전담인력 보유 중소기업 비율 : 27.4%('10) → 40%('16)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공공연구기관은 높은 지식재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관리 역량이 미흡하여 우수 지식재산 창출·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전략·자본·인력 부족으로, 대기업과의 지식재산 격차가 심화(평균특허출원건수 : 대기업 93.8건, 중소기업 2.24건)

□ 주요 추진과제

- (공공연구기관 역량 고도화) 「IP심의위원회」를 통한 IP자산 평가*, 기관별 지식재산 질적 관리규정 마련 등 우수 지식재산 중심 관리
 - * 보유 IP에 대해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활용IP와 퇴출IP 선정
 - R&D 기획·관리·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역할 강화
 - ※ 전문인력 확충, 사업별·기술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기관의 특허관리역량 진단 결과 및 지식재산 경영 수준 등을 반영하여 기관평가를 질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
-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재권 경영전략 수립 지원 및 분쟁대응 등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 지원
 - 중소기업 R&D현장에 지재권 전문가를 파견,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획득전략’* 수립을 통해 부품·소재 핵심원천특허 확보 지원
 - * (R&D기획) 지재권 확보전략 제시 → (R&D수행) 해당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략특허 획득방안 제시 → (R&D완료) 시장선점을 위한 지재권 보강전략 제시

5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성과 지표	◆ 특허 심사처리기간 : 18.5개월('10) → 10개월('16) ◆ 산업재산권 심사오류율 : 1.47%('05~'09 평균) → 1.32%('16)
----------	---

□ 현황 및 문제점

- 법적 보호를 위해 권리화 절차가 필요한 지식재산의 경우 권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요구 증대
 - ※ 지식재산 양적 성장 및 고품질 특허 심사 요구로 심사처리 기간 증가
-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의 경우 등록의 형식심사 원칙으로 인한 고의적인 저작권 허위등록 사례가 발생하여 시장혼란 초래

□ 주요 추진과제

- (산업재산권 심사 고도화) 적정 심사처리 기간 유지를 위한 심사 인력 증원 및 효율적 운영, 맞춤형 심사 처리제도 내실화
 - 진보성 판단 기준 명확화, 명세서 품질 제고, 심사관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심사품질 관리 고도화
 - IP5 등 국제 특허 심사협력 확대, 상표·디자인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특허법 조약(PLT)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심사절차 개선
- (저작권 등록 안정성 제고) 명백한 저작권 허위 등록시 직권말소 제도 도입 등 저작권 등록제도 실효성 확보
 - 등록저작물의 디지털화 확대, 저작물 비교·검색 시스템 구축 등 허위 등록 방지를 위한 저작권 등록 시스템 고도화
 -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이중보호에 따른 혼란 방지 방안 검토

6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성과	◆ 지식재산 보호지수(IMD) : 32위('10)→ 26위('16)
지표	◆ 저작물 합법시장 침해율 : 19.2%('10) → 15%('16)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의 불법유통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 침해의 심각성이 지속 증가
-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기기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법복제 등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추진과제

- (불법유통 방지체계 구축)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 위조 상품 거래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 책임 범위 명확화 등
- (소프트웨어 정품이용 문화 조성) 공공부문 정품S/W 실태 점검, S/W임치제도* 활성화, 오픈소스 S/W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
 - * S/W 거래 시 개발기업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기업의 이용권 보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S/W 및 관련 기술정보를 예치해두는 제도
-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국경조치 강화를 위한 단속시스템 개선, 신고·침해여부 판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수사전문인력(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역량 강화, 정부합동 특별 집중 단속, 디지털 증거분석 및 저작권 감정 능력 강화
-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인식 제고,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 등 보호 인프라 강화
 - 산업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역량 제고

성과	◆ 해외진출 저작물 인증 건수: 1,800건('10) → 2,500건('16)
지표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컨설팅 건수: 1,335건('10) → 2,300건('16)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지식재산 경쟁력 상승 및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침해 증가
 - 특히, 개도국에서의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현지 정보부족, 침해예방 활동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 노출
- 지재권 집행의 속지주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각국 지재권 보호기관과의 업무 협력·네트워크 형성이 필수

□ 주요 추진과제

- (해외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 조사 및 관련 정보·동향 제공 등 지재권 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
 - ※ 해외 각국의 지재권 법제·정책 및 분쟁대응 전략 등 국가별 가이드북 제작·배포
 - 지재권 협회, 상공회의소 등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 지원, 국가별 국제 분쟁대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의 대응역량 제고
- (침해대응 현지 지원체계 구축)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기관*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설치 확대, 지재권 소송보험제도 이용 활성화
 - * 해외 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등
 - 재외 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 국제기구 및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체계적인 지재권 통상대응 시스템 구축
 - ※ 개도국 지재권 단속 공무원 초청·연수, 위조상품 적발 정보 교환 프로젝트 확대
 - 동아시아 국가 간 저작권 대체적 분쟁해결(ADR) 협의체 검토

성과	◆ 심판처리기간 단축 : 10.6개월('10)→ 6개월('16)
지표	◆ 심결 취소율 제고 : 21.3%('10) → 20% 이하('16)

□ 현황 및 문제점

- 지재권 침해사건에서 권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 제기
-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 및 관할 복잡성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지재권 소송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에 애로
-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도 저조
 - ※ 산재권 조정신청건수 3건, 저작권 조정신청건수 62건('10)

□ 주요 추진과제

- (소송의 실효성·전문성 확보)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 (예시) 일실손실 등 지재권 손해배상 산정기준 및 소송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증거조사 제도 개선,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실시료 통계기준 작성 등
 -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허소송 관할 집중 등 지재권 분쟁 해결제도의 신속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 (심판의 신속성·품질 제고) 심판관 역량 강화 및 심판 인력의 효율적 운용, 구술심리 확대, 심판관 등급제* 내실화 추진
 - * 수석·선임·일반 심판관으로 구분, 능력에 따라 목표치 및 인센티브 차등 부여
- (재판의 분쟁해결 활성화) 조정 위원회 전문성 제고, 분쟁 조정 수요 발굴·홍보 및 기관 중재제도 도입 검토
 - ※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분쟁 조정신청 시스템 구축

VI

지식재산 활용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9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성과 지표	◆ 대학·공공연구기관 연구생산성 : 1.48%('10)→3.4%('16) ◆ 기업의 온라인 거래시스템·DB 활용률 : 21.3%('10)→35.0%('16)
----------	--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용 성과가 낮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역량 및 지원 실효성 미흡
 - ※ 연구 생산성(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 : 미국 4.32%, 한국 1.48%('10)
- 지식재산 유통 정보 시스템간 연계 부족 및 활용도 저조, 민간의 상업화 수요에 비해 국유특허 및 공유저작물 활성화 여건 미성숙

□ 주요 추진과제

-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 TLO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미활용 기술의 아웃소싱을 통한 이전 및 공동 기술사업화 등 성과 확산
 -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 및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확대 발전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투명한 거래 시장 조성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
- (사업화 지원체계 확충) 기술사업화 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 연구소기업,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공공·공유 지식재산 이용 확대) 국유특허·공공정보 활용 촉진, 공유저작물 수집·관리체계 구축,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이용환경 개선
 -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성과	◆ 창의자본 조성 : 300억원('10) → 6,000억원('16)
지표	◆ 기술신탁 이전건수 : 11건('10) → 150건('16)

□ 현황 및 문제점

- NPEs* 등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국내 기업의 특허소송 위험 및 로열티 부담을 야기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서도 부상
 - * NPEs(Non-Practicing Entities) : 제품의 생산·제조·판매 없이 특허소송과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관리회사
-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시장의 낮은 신뢰도와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금융제도 부족으로 지식재산 거래 및 민간자본 투입 저조
 -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중 기술금융 비중은 6.6% 수준에 불과('07)

□ 주요 추진과제

-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강한 특허 풀 확보를 위한 창의자본 조성·운용, 다양한 글로벌 NPEs(방어형·소송대행형 등) 발굴·육성
 - 기술신탁관리기관 확대 및 수탁자 역할 강화,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투명성·신뢰도 제고 등 지식재산 신탁형 비즈니스 활성화
 - 기술수출 제한 규정 정비 및 수출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절차 마련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정당한 기술 수출·활용의 조화
- (가치평가 시장 다변화)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가치평가 모델 개발, 민간 주도형 가치평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기술평가 인력의 역량 강화, 민간 평가기관 지정 확대, 기술평가 수요 창출 등
-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가치평가와 금융상품 간 연계 강화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투·융자 활성화 유도
 - ※ 창업 및 초기 단계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비중 확대 등

성과
지표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 : 3,400억원('10) → 5,000억원('16)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 활동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역할 증대 및 이에 대한 기업 수요 증가 추세
 -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활동에 대한 정보조사·분석, 평가, 교육, 번역, 거래, 컨설팅,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시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역량이 미흡
 - *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09, 3,377억원)는 일본의 1/4에 불과

□ 주요 추진과제

-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서비스산업 실태 조사·분석,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 내 독자적 분류체계 마련 및 관련법령 정비
 -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서비스 대가 적정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 고품질화 기반 구축
 - * (예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 등
- (경영지원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수요-공급 중개 지원시스템 구축, 기술거래 오픈마켓*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확대
 - * 개인과 소규모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
- (사업화지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화 전주기(기술기획~금융)에 걸친 업무역량을 확보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 육성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 기반 마련, 특수분야 전문 연구·생산 대행 조직의 육성·지원 등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기반 확충

성과	◆ 중소기업 기술임치건수 : 453건('10) → 10,000건('16)
지표	◆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수(누계) : 165개('10) → 200개('16)

□ 현황 및 문제점

-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및 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약화
 - * 대기업 기술자료 요청대상 중소기업체의 22%가 기술탈취 경험(공정위, 서면실태조사, '09)
- 시장질서 저해와 후속혁신 방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대응 한계
 - * 기술표준화 과정의 특허매복 행위, 특허권 만료 이후 로열티 부과 등

□ 주요 추진과제

-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중소기업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 서면계약 문화 정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약 유도 등을 통해 기술의 기부·공유 등 협력 문화 조성
- (권리남용 대응 강화) 지재권 남용 우려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국가간·부처간 공조 강화
 - * 한·미 FTA 이행 등에 따른 미국식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로 의약품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우려 증대
 - '지재권 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예측가능성 제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 저작권상생협의체* 등 공생발전을 위한 자율적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 권리자 단체,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13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성과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 비율 : 46.4%('10) → 65%('16)
지표	◆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비율 : 18.7%('10) → 21.8%('16)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의 '재산'으로서 가치는 증대되나, 지식재산 존중의식 부족 및 지식재산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 문화 미정착
- 지식의 창출·보호·활용 각 단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에 애로

□ 주요 추진과제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소양교육을 통한 범국민 인식 제고, 체험공간 확충·개선 등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 '최고 지식재산인' 및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비·창작비 지원
-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영상저작물 실연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 산·학 공동연구 및 공공발주* 계약체결 관행 등의 합리적 개선
 - * 정부 용역으로 개발한 결과물(S/W, 연구보고서 등)의 이용 합리화 방안 마련
-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재권 보유·활용의 균등 기회 제공 및 접근성 제고
 - * 법률 자문, 국제출원비용, 심판·소송비용, 시작품(試作品) 제작비용, 가치평가 등
 - 교육취약 지역·계층 지식재산 교육 확대, 농어촌 지식재산 역량 강화

성과	◆ 지식재산 연구인력(누계) : 29,000명('10) → 100,000명('16)
지표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누계) : 2,000명('10) → 3,000명('16)

□ 현황 및 문제점

- 인력 수급 현황 및 미래전망 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 전략이 미흡한 가운데 분산적·단발적 인력양성 정책 추진
- 초·중·고 및 대학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고,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 양성 시급
 -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도 양적·질적으로 미흡

□ 주요 추진과제

- (인력양성 기반 강화) 인력 수급 현황, 미래예측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개선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교사·교수의 지식재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등 교육과정 확대, 지식재산 교육인력 처우 개선
- (창조적 인재 양성) 발명 및 문화예술 등 창의성 교육과정 확대
 - 발명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기술·경영·지식재산 마인드를 갖춘 전문기업인 또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로 양성
 - 지식재산교육 확대*를 통한 대학·기업 및 연구기관의 전문역량 강화
 - * 대학(원) 지재권 강좌 확대·개설, 기업·연구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등
-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 법조인력(변리사·변호사)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 기업 경영층 및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지식재산 경영역량 제고

성과	◆ 산업재산권 정보 건수 : 192백만건('10) → 310백만건('16)
지표	◆ 산업재산권 정보활용 건수 : 28백만건('10) → 66백만건('16)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등에 따라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10여년 전부터 법률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연구의 양적·질적 부족 및 전문적 연구역량 미흡으로 체계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이 곤란한 상황
- 지식재산 정보가 부처별로 상이한 분류체계에 따라 집계·관리되고 있어 포괄적·종합적인 정보제공에 한계

□ 주요 추진과제

- (정책추진체계 구축)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맞추어 관련법령 제·개정 및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등 행정체계 정비
 - * 중앙부처, 유관 위원회, 지자체, 민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연구기반 강화)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 육성·지원, 대학·공공(연) 및 산업계의 지식재산 연구 활동 지원
 - 연구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 연구 결과물의 공유·확산 및 연구품질의 제고
- (정보·데이터 확산) 국가 지식재산표준분류체계 수립, 지식재산 통합 포털 구축 등을 통한 지식 확산·활용 기반 마련
 - ※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간 연계·고도화 등으로 기초통계 산출·분석·활용 활성화
 - 원시정보(raw data) 제공체계 마련 및 공공 지식재산정보 DB 공개 등을 통해 지식재산 정보의 유통·확산 활성화

성과	◆ 지식재산을 활용한 ODA 사업 수 : 3건('10) → 7건('16)
지표	◆ 지역 기업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회수 : 100건('10) → 200건('16)

□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의 국가 간 업무협력 및 새로운 지식재산* 규범형성의 요청이 확대
 - * 유전자원, 식물신품종, 전통지식, 지리적 표시 등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체계구축이 미흡하며,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현황 파악 부진 및 교류채널 등 미비

□ 주요 추진과제

-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 국제규범 형성과정 적극적 참여, 국가간 법·제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제도 선진화·효율화
 - 지식재산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국격 제고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시장 발굴·선점
 - ※ 최빈·개도국에 적정기술 보급, 브랜드 획득 지원 및 지재권 보호 교육, 저작권 관련 제도의 확산 및 집행 지원 등
- (지역 지식재산역량 강화)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기능·역할 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및 전통산업의 브랜드화 지원 확대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획득 지원, 전통식품 브랜드의 해외상표등록 지원 등
-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 남북 지식재산 법·제도의 현황분석 및 조화방안 연구, 정부·민간의 교류·협력채널 구축 등 기반 조성

17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성과 지표	◆ 식물 품종보호 출원 건수 : 5,141건('10) → 8,962건('16) ◆ 신품종 종자수출액 : 2,500만달러('10) → 7,000만달러('16)
----------	--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품종보호권 등록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대체 및 수출 전략 품종에 대한 지재권 확보는 미흡
- 국제적으로 품종보호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침해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대응력 미비
 - * (품종보호국) 49개국('00)→70개국('11), (국내 품종보호 대상작물) 27품종('98)→모든 식물('12)

□ 주요 추진과제

- (민간 육종역량 강화) 연구단지·센터 조성, 인턴제를 활용한 육종 인력 양성, 전략품목 R&D 투자 확대 등 품종개발 기반 구축
 - 직무상 육종에 대한 보상 현실화, 실용화재단을 활용한 산업화 촉진, 국내 육성품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에이전트 육성
- (품종보호권 침해대응 강화) 종자위원회에 직권조정권한 부여 등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국경조치 확대 등 침해분쟁 대응 강화
 - ※ 종자유통조사담당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 (품종보호 체계 정비) 「종자산업법」과 「품종보호법」 분리 제정을 통한 출원·심사절차 간소화 및 권리구제 절차 명확화
 - 품종보호제도 실시기관* 간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개도국 품종보호제도 정착 지원 등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 * 국립종자원(농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수산)

성과	◆ 고유 생물자원 확보수 : 37,000종('10) → 47,000종('16)
지표	◆ 농림수산생물자원 확보수 : 140만점('10) → 157만점('16)

□ 현황 및 문제점

- 생물자원은 생명산업 발전 및 인류 난제(에너지·환경·식량 등)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성 및 활용 가치가 급속히 증가
 - ※ '인류 공동자산' →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로 생물자원 보유국가의 자원주권 인정('93)
- 우리나라는 보유 생물자원의 다양성 및 규모 측면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심하고, 생물자원의 체계적 발굴·확보 미흡
 - ※ 우리나라에는 전세계 생물다양성 1억종 중 약10만종이 분포, 기록종은 37%에 불과

□ 주요 추진과제

- (생물자원 발굴) 정기적 생물자원 실태조사, 생물자원 발굴·확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기반 구축
 - 생물자원 보존·관리의 표준화*, 시설·장비 확충,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보존·관리 인프라 확충
 -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국가 표준 생물종 분류체계 구축 등
- (활용기반 구축) 생물자원 특성 분석을 통한 가치 발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연계, 수요자 중심의 생명윤리 정책지원체계* 구축
 - * 인체자원 활용시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는 각종 절차를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있는 기능 및 절차의 통합 추진
-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생물자원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논의 등에 따른 국내 이행 관련 법·제도 정비

성과	◆ 전통지식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지원수 : 376개소('10) → 446개소('16)
지표	◆ 무형문화유산 국가대표목록수 : 525개('10) → 1,000개('16)

□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의약·막걸리 등 전통자원의 막대한 부가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나, 전통자원의 발굴 및 보호 기반 미흡
 - ※ 전통자원 : 전통지식(전통 의약·식품 등) 및 전통문화표현물(이야기·음악·춤·인형극 등)
- 전통자원 보호방안에 대한 선진국(유연한 보호 제안)과 개도국(구속력 있는 규범 설립 주장)간 입장차 현격

□ 주요 추진과제

- (발굴·관리) 전통자원 발굴 및 기록화 사업 추진, 분류체계 설정 및 지표 개발 등 체계적인 발굴·관리 체계 마련
 - 전통식품, 자생식물, 무형문화재 등 전통자원의 DB화 및 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정보체계 구축 등
- (산업화 촉진) 전통자원의 개발가치 평가 및 복원·재생 방안 연구, 전통자원 기반 창작·개발 활성화 지원
 - ※ 전통예술 브랜드화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2차 신기술 및 문화상품 개발 등
 - 전통지식의 관광 테마화, 전통기술 활용 소득화 시범사업 추진
- (국제적 대응) 민·관 합동으로 전통자원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국내 법·제도 정비, 유사 제도의 통합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성과	◆ 지리적표시품 출하량 : 155천톤('10) → 536천톤('16)
지표	◆ 지리적표시 관련 등록 건수 : 209건('10) → 377건('16)

□ 현황 및 문제점

- 지리적표시 제품*의 영향력 증대 등에 따라 지역명품 브랜드 육성 및 전략산업화 중요성 확대

* 보르도 와인, 샴페인 와인, 노르망디의 까망베르 치즈, 고려홍삼 등

- 종래에 보호되지 않던 비전형적 식별표지(소리·냄새 등)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유망 신지식재산의 지속적 발굴·대응 필요

□ 주요 추진과제

- (식별표지)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제도 보완, 등록품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 우수 지역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 획득·활용 및 해외 분쟁대응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 지리적표시품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구성·운영, 해외 오·남용 현황 조사 및 주요국간 협의채널 개설
 - (유망 신지식재산) 퍼블리시티권, TV 포맷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법적 보호 필요성 및 보호범위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모색
 - 종래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았으나 시장성이 크고 유망한 신지식재산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제도개선 등 선제적 정책대응
 - 국제사회에서 확산 가능성이 높은 라이프스타일(globalized life-style)*에 대한 착안 및 브랜드화·권리화 가능성 등 적극 모색
- * 첨단 과학기술과 콘텐츠·미디어 환경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휴먼-머신 인터페이스, 소셜미디어 등)

IX

재정투자 계획

1 총괄 현황

- '12~'16년 기간 동안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조 1,533억원 규모(연평균 2조 307억원)로 추정
 - 분야별로는 창출분야가 7조 5,631억원*(74.5%)으로 가장 많고,
 - 이어서 활용 9,631억원(9.5%), 신지식재산 8,986억원(8.9%), 보호 4,145억원(4.1%), 기반 3,140억원(3.1%) 순
- * 예산규모가 큰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창출분야에 다수 포함되는데 기인

<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분 야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창 출	13,217	14,621	15,666	15,971	16,156	75,631
보 호	731	808	836	868	902	4,145
활 용	1,494	1,883	2,069	2,193	1,991	9,631
기 반	591	609	627	646	666	3,140
신지식재산	1,464	1,964	1,841	1,828	1,888	8,986
합 계	17,497	19,885	21,039	21,506	21,603	101,533

2 전략목표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전 략 목 표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합 계	17,497	19,885	21,039	21,506	21,603	101,533
①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175	194	198	201	204	972
②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3,543	4,096	4,404	4,611	4,698	21,352

전략 목표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③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9,243	10,013	10,727	10,797	10,887	51,666
④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256	318	338	362	368	1,642
⑤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422	468	476	487	499	2,350
⑥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211	239	255	273	291	1,269
⑦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보호 강화	91	94	97	100	103	484
⑧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8	8	8	9	9	42
⑨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538	579	605	668	732	3,122
⑩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413	414	431	410	109	1,777
⑪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505	786	913	984	1,014	4,201
⑫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38	105	120	131	136	531
⑬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77	182	188	193	199	939
⑭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46	149	153	156	160	765
⑮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63	170	177	185	193	887
⑯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105	107	110	112	115	549
⑰ 신제품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68	186	113	61	43	471
⑱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1,354	1,699	1,648	1,685	1,762	8,150
㉑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38	76	77	79	80	352
㉒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3	3	3	3	3	15

※ 연도별 재정투자액은 추정치로서 향후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①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1.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	
	1. 국가 연구개발-특허-표준 연계시스템 구축
	2. 표준특허 창출 기반 조성
2.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1.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2. 수행단계에서 지재권 획득전략 추진
	3. 완료단계에서 지재권 관리 강화
3. 연구개발 유형별 지식재산 창출 차별화	
	1. 미래 지식재산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활성화
	2. 응용 및 개발연구의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연계 강화
②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1. 융합형·글로벌 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
	2. 콘텐츠관련 핵심기술 개발
	3. 콘텐츠 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2.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1. 글로벌 브랜드 가치 창출제도 구축
	2.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2. 해외 진출 전략성 강화
	3.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체계 혁신
③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2.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신장 3. 콘텐츠 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조성
	2. 개방형 연구개발 및 해외 우수인재의 활용 촉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공동연구의 활성화 2. 해외 우수 지식재산 창출 인력의 유치 3. 해외 지식재산의 도입·활용 활성화
④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1.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 지식재산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 관리 2.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3. 연구자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개선
	2. 중소기업의 핵심·원천 특허 창출 역량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지원 2. 미래 유망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
⑤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1.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품질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최적화 2. 심사품질 및 심사처리 기간의 합리적 관리 3.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2. 저작권 등록제도의 안정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권 등록제도 실효성 확보 2. 저작권 등록 시스템 개선 3.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이중보호에 따른 혼란 방지
⑥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지식재산 침해물품 불법 유통 방지 체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상 불법 유통 방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2.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
	1. 소프트웨어 보호 집행력 제고 및 제도 활성화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3.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1.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2. 수사(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배양
	3.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내실화
	4.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기반 공고화
	1. 산업기술 등의 보안 역량 확보 및 의식 제고
	2. 효율적인 보호 인프라 구축
[7]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1.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1.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마련
	2. 민간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 제고
	2. 침해 대응 현지 지원 체계 구축
	1. 현지 침해 대응 활동 강화
	2. 분쟁의 효율적 해결 지원
	3. 국제공조 체제 구축
[8]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1. 지재권 소송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1. 지식재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 특허 소송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2. 산업재산 심판의 신속성 제고 및 품질 고도화
	1.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
	2. 심판 품질의 제고 및 심판 인력의 역량 강화
	3.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조정제도 내실화 2. 중재제도 도입 및 활성화
㉑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연구성과 확산체계의 선진화
	1. 성과확산 전담기구의 사업화 역량 강화 2. 지식재산 유통체계 고도화
	2.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1.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3.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상업적 이용 확대
	1. 정부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 2. 공유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 활성화
㉒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1. 지식재산 전문관리 비즈니스 육성 2.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3. 시장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2. 가치평가 시장의 다변화 유도
	1.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2. 민간 주도형 가치평가시장 활성화 3. 온라인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
	3.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1. 기술금융 활성화 2.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 유인 강화 3. 콘텐츠산업 투자·융자 시스템 확충
㉓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1.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2. 지식재산 서비스의 고품질화 기반 구축
	2. 지식재산 경영지원 서비스 활성화
	1. 지식재산 경영지원 서비스 수요 창출
	2. 정보 분석, 거래,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3. 사업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1. 시험인증 서비스산업 육성
	2. 전문 R&D 지원 및 생산대행 서비스 강화
	3. 시장 창출형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 육성
12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탈취·유용 예방
	2.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동반성장 유도
	2.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 강화
	1.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및 사전예방 기반 조성
	2. 지재권 관련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환경 개선
13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1. 지식재산 소양교육 강화
	2. 지식재산 전략적 홍보 추진
	3. 지식재산인(人)에 대한 대우 강화
	2.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1.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활성화
	2. 정당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3. 지식재산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3.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1. 교육취약지역·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14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강화	
	1.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시행
	2.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2. 창조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	
	1. 창의적 발명·창작인재 양성
	2.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3.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	
	1. 지식재산 전문지원인력 양성
	2. 지식재산 경영인력 양성
15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구축·시행	
	1.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2. 지식재산 행정체계 정비
2.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	
	1.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연구기반 강화
	2.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3.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및 확산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및 효율화
	2. 공공 지식재산 정보 확산
16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1.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	
	1. 지식재산 분야의 전방위적 국제협력 확대
	2. 對개도국 지식재산 지원 확대
2.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1.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3.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1.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기반 조성
	2.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협의체계 구축
17 신제품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1. 신제품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1. 민간 육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2.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투자 확대
	3. 육종 저변확대 및 활성화 지원
	4. 품종의 보급·마케팅 지원 및 해외 품종 출원 강화
	2.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대응 강화 및 실효성 증대
	1.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및 조사 강화
	2. 품종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경조치 강화
	3. 품종판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3. 품종보호 체계정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1.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행정체계 정비
	2. 품종보호관리를 위한 품질인증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 강화
18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1.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1.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2.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3. 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2. 생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및 지원서비스 강화
	1. 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2.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3.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생물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 및 대응 강화
	1. 범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9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1.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1. 전통자원의 발굴 지원 및 체계적 관리
	2.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2. 전통자원 기반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1.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2. 전통자원 기반 활용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3.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1. 전통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대응
	2.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및 대응 방안 수립
20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1. 식별표지의 창출·활용 강화 및 보호제도 개선
	1. 지리적 표시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활성화
	2.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지원
	3.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식별표지 보호제도 개선
	2.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1. 퍼블리시티권·TV 포맷 등의 활용·보호 제도 구축
	2.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의 발굴 및 정책대응